

더유니파이(주)- 송실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 협정서(정원 내/외)

더유니파이(주)과 송실사이버대학교(이하 'KCU'라 한다)는 임직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정은 더유니파이(주) 임직원이 KCU에 위탁교육(신.편입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협정기간)

본 협정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전 일방 당사자의 별도 서면에 의한 재협정 포기 내지 해지 통지가 없는 한 매 1년마다 협정을 자동 연장한다. 단, 연장 시에는 직전 년도 연계교육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학비 감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학비감면혜택)

KCU는 더유니파이(주)에서 입학한 자에게 매 학기 수업료 4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1. 단, 수업료는 KCU의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금을 제외한 학점 당 등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KCU는 더유니파이(주) 신.편입 대상자의 교육비 책정 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책정한다.
2. 수업료에 대한 KCU의 지원은 신입 142학점, 2학년 편입 105학점, 3학년 편입 72학점(신청 학점 기준)까지로 제한하며, 추가학점 수강 시 신.편입 대상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위탁생의 경우, KCU가 정하는 혜택(입학 첫 학기 수업료 30만원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4조 (위탁생 자격 및 지원절차)

1. 위탁생 자격
 - ①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더유니파이(주)에 재직 중인 자
 - ② 편입학: 당해 학년 편입학에 필요한 수료인정학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더유니파이(주)에 재직 중인 자
2. 지원절차: 더유니파이(주) 재직자에 한해 KCU 입학전형 절차에 의하여 모집한다.

제5조 (선발과 입학)

1. 신.편입 대상자는 더유니파이(주) 임직원에 한정한다. (신.편입학 시 공적증명서 제출)
2. 위탁교육생은 정원 외 선발을 우선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동일한 학비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정원내로 선발 할수 있다.
3. 전 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KCU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하고 평가기준과 절차는 KCU의 규정에 의한다.
4. 대상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KCU 입학전형평가 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선정한다

제6조 (위탁교육 대상자의 신분)

본 협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대상자는 KCU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KCU의 학칙을 적용 받는다.

제7조 (위탁생의 학사관리)

1. 위탁생의 학사관리는 KCU의 학칙을 따르되, 위탁생이 소속 기관을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교육부 '사이버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
2. 더유니파이(주)에서는 KCU가 위탁생의 재직여부를 확인 요청 시, 신분 변동자에 대한 학사관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무)

KCU와 더유니파이(주)에서는 본 협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및 비밀을 보장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의무는 본 협정 기간 중은 물론 본 협정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한다.

제9조 (양도금지 등)

당사자들은 본 협정 기간 동안 협정 이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일방 당사자 본 협정에 따라 보유하게 될 권리, 의무, 지위를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대행, 대리케 하거나 증여, 상속, 기타 처분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의 해제 및 해지)

1. 당사자들은 본 협정을 수행할 법률적, 행정적, 기술적, 재산상 등의 능력 및 자격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사전 서면 통지로서 본 협정을 해제,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해제 또는 해지일자는 서면 도달일자로 본다.
2. 당사자들은 본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15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 시 까지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서 본 협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해지일자는 해지 서면 도달일자로 본다.
3. 당사자들은 언제라도 90일 전 서면 통지로서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1. 본 협정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1. 29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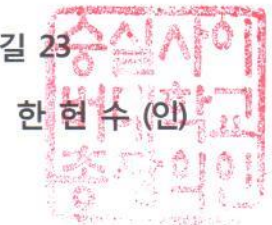
더유니파이(주) 대표 이사

이영걸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3

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한현수 (인)